
전주백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▶ 계약기간

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▶ 계약목적

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인 기관과 서비스대상자인 이용자(또는 보호자)가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▶ 본인부담금

- 가)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.
- 나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다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% 또는 40% 경감한다.

▶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① 권리

- 가)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나)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다) 입소자의 안전성 요구 및 면회 및 외박, 외출에 관한 권리
- 라) 시설의 협약, 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의무

- 가) 입소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나)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다)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라)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병, 입퇴원 절차,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

▶ 계약의 해제

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-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
-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
-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어 시설급여가 탈락된 경우로 등외 입소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

[별표1]

전주백세요양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

2025.01.01. 기준

가. 등급별 시설급여 1일당 수가

1등급	2등급	3~5등급
90,450	83,910	79,240

나. 비급여 항목 및 비용

비급여 항목	금액(원)
식재료비(1일)	3,000원 x 3식 = 9,000원
간식비(1일)	1,400원

다. 노인요양시설 월 이용료 (30일 기준)

구분	1등급	2등급	3~5등급
1일 수가	90,450	83,910	79,240
30일 수가	2,713,500	2,517,300	2,377,200
본인부담금(20%)	542,700	503,460	475,440
비급여항목 (식사재료비,간식비)	312,000	312,000	312,000
총계(원)	854,700	815,460	787,440

라.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분	시설급여
일반	20%
기초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 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.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 또는 12%

마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- 기본원칙 :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및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.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세부기준
 - ①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 및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이며 점心和 저녁으로 구성됨
 - ②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
단, 시설종사자,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
손·발톱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바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- 기본원칙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